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11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098	손명수의원 등 10인	'24.12.31.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54	이소영의원 등 11인	'25.3.17.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41	한준호의원 등 16인	'25.3.19.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 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과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영상정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명처리”를 “처리(이하 “의명처리”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

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축하고 개신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개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0조의2제4항 및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제20조의 2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u>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u> ”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용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 <u>영상정보</u> ”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u> 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u>개인정보 보호법</u> 」에 따른다.
제20조(의명처리된 개인정보 등)	제20조(의명처리된 개인정보 등)

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

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p><u>부과한다.</u></p> <p>1. <u>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u> <u>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u> <u>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u> <u>아니한 자</u></p> <p>2. <u>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u> <u>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u> <u>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u> <u>자</u></p> <p>① ~ ③ (생략)</p> <p>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p> <p>⑤ ----- <u>제4항까지</u> ----- ----- ----- -----.</p>
<p>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u>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p>	